

임원선출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12조제5항제1호의 임원선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자격) 각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단, 여기서의 역임은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를 모두 마친 것을 말하며,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당해 임원을 역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회장 : 임원을 2회 이상 또는 지회장을 역임한 정회원
2. 부회장 : 임원을 역임한 정회원. 단 관계·산업계 소속 정회원 중 건축문화, 기술, 학술의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임원을 역임하지 않아도 임명직 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2021.9.10 개정>
3. 지회장 : 각 지회규약의 임원선출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정회원
4. 이사 : 가. 정회원으로 입회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자
나. 건축문화, 기술, 학술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5. 참여이사 : 가.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정회원
나. 지회장을 역임한 만 58세 이상의 정회원과 4회 이상 임원을 역임한 정회원
다. 건축문화, 기술, 학술의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정회원
6. 감사 : 2회 이상 임원을 역임한 정회원 <2021.9.10 법령및규정분류체계에 따라 조항호목 표기 개정>

제3조(임원 선거권) 임원 선거인의 자격은 선거공고일로부터 정회원으로 입회한 지 5년 이상 경과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이사회는 임원 선출과정을 공정하게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결성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9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정한다.
- ④ 위원이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 전에 본 위원회에서 사퇴하도록 한다.
- ⑤ 전항의 경우 위원회의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은 회의소집 전, 위원들에게 회의 안건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⑧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입회장 취임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5조(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장은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을 위하여 회장의 임기만료 90일 이전에 선거공고를 한다.

제6조(임원선출방법) ① 회장은 유효득표수가 가장 많은 자로 확정한다. 다만 동일득표시에는 연장자로 한다.

- ② 총무, 연구1, 연구2 담당부회장 선거에서는 1회 투표에 3인을 기표하며, 당선자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다만 동일득표시에는 연장자로 한다.
- ③ 연구3, 지회 담당부회장 선거에서는 각각의 투표에 1인을 기표하며, 당선자는 유효득표수가 가장 많은 자로 한다. 다만 동일득표시에는 연장자로 한다. <2021.9.10 개정>

제7조(후보자 등록 및 사퇴) ① 회장 후보자는 임원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 25인 이상의 추천과 소정서식, 부회장(선출직) 후보자는 임원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과 소정서식에 의해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공고일 이후 5일에서 10일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직전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회장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한편, 지회장은 지회담당부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운동)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부칙

(규정시행) 본 규정은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1970년 10월 5일 제정된 임원선출위원회 규정은 동일부로 폐지한다.

본 규정은 1993년 4월 7일부터 시행하며 1979년 6월 1일 개정된 임원선출위원회 규정은 동일부로 폐지한다.

1. 본 규정은 199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0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0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0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09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1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규정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규정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